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6. 2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5월 26일 허정행 의원 외 6명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5일
다. 상정일자 :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6월 24일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허정행 의원

가. 제안이유

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·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·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2)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3) 보육시설,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4)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경찰서, 교육청, 관련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5)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상수)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가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구민은 교통안전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○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·관리 및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음

○ 안 제6조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자체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○ 안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, 교육청 등과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○ 안 제8조에서는 초등학교 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안 제10조에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 등을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
○ 그동안 중앙정부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, 보호구역 주변의 통학로는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·차도 혼용, 불법 주·정차 등으로 등·하굣길 보행안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4년 초등학교,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변 통학로에 대하여 전방위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,

○ 서울특별시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'15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대책'을 마련하여 금년 3월2일부터 교통시설물 정비,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을 본격 시행중에 있음.

○ 또한,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15,642건에서 2012년 12,49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, 2009년 기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스웨덴·영국 0.6명, 일본 0.7명, 독일 0.8명, 프랑스 1.1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.9명으로 아직까지 높은 편임.

○ 따라서, 동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진구 등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, 우리 구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

○ 기타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